

산 업 경 제 국

산업경제국 조치결과(계획) 총괄

□ 지적사항별

(단위 : 건)

부 서 별	지 적 사 항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계	8	-	2	6
기업지원과	4	-	-	4
소상공인과	1	-	-	1
위생과	3	-	2	1

□ 조치사항별

(단위 : 건)

부 서 별	조 치 결 과 (계획)				
	계	완 료	조치중	시기미도래	불 가
계	8	6	2	-	-
기업지원과	4	3	1	-	-
소상공인과	1	1	-	-	-
위생과	3	2	1	-	-

【 기업지원과 】

목 록

- 기업유치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서비스 수립
- 기업 환경개선 노력
- 빈 무역센터 운영 폐지 검토
- 우수기업 유치방안 검토

기업유치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서비스 수립

□ 지적사항

- 우리 시로 유치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을 줄이는 계획수립으로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결과 : 완료

- 기업의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한 기초(입지) 검토 단계부터 투자 결정 후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를 위한 행정지원까지 기업이 느끼는 행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기업 유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기업의 건의 사항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유치기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 “2022 기업유치 세부 업무추진계획” [기업지원과-809(2022. 1. 17.)호]
수립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행정지원 연중 추진
- 유치기업과 상생·협력 가능한 기업의 발굴(매칭 지원) 및 관련 기업의 추가 유치 노력 병행

일련번호	9
------	---

기업 환경개선 노력

지적사항

-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시비 등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노력

조치의견 : 건의요구

조치결과 : 완료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비율 변경
 - 자부담 축소 및 도비·시비 지원 강화(자부담 10% 감소)

	년도	도비	시비	자부담
변경 전	2021	30%	30%	40%
변경 후	2022	35%	35%	30%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확대
 - 사업비 증액 및 지원대상 업체 수 확대(지원대상 업체 4개사 증가)

	년도	지원대상	사업비
변경 전	2021	18개사	349,026천원
변경 후	2022	22개사	770,211천원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향후계획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및 시비 매칭 지원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기업인회·개별기업에 적극 홍보로 다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빈 무역센터 운영 폐지 검토

□ 지적사항

- 베트남 빈 무역센터의 운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폐지 검토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결과 : 조치중

- 빈 무역센터 운영계획 변경
 - 빈 무역센터 이전 계획 철회(빈시 내 상설 무역관 운영 중지)
 - 빈 무역센터 운영 중단 및 빈시에 경제단체 사무실 제공 요청사항을 화상 회의 전 사전 의견 전달(2022. 2. 3 / 교류협력과 협조)

□ 문제점 및 대책

- 빈시에 경제단체 사무공간 부재
 - 남양주 기업인이 빈시를 방문하였을 때 업무 협의 및 사무처리 공간 필요
- 경제단체 사무실 무상 제공 요청(남양주시 → 빈시)
 - 사무기기(팩스, 복사기, 인터넷 사용 가능 컴퓨터 등) 포함
- 빈시 경제단체와 경기동부상공회의소의 경제교류는 지속 유지
 - 기업 간 화상 미팅, 상호 방문 경제교류

□ 향후계획

- 베트남 빈시와 화상회의(2022. 4.)
 - 빈 무역센터 철수, 빈시에 경제단체 사무실 제공요청 등 화상회의 추진

우수기업 유치방안 검토

□ 지적사항

-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우리 시에도 우수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지원 등 최대한 노력 요망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계획 : 완료

- 우리 시의 자족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젊은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시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 이를 위해 쉽 없는 유치홍보와 전문용역의 추진,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 지속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기업이나 산업(경제)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행정조직의 한계
- 기업(산업·경제) 동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투자유치 경험이 많은 전문가 영입으로 한계 극복 필요

□ 향후계획

-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 연중 추진
- 전문인력 확보방안 검토

【 소상공인과 】

목 록

- 비도심지역 상인회 지원 방안 마련

비도심지역 상인회 지원 방안 마련

지적사항

- 비도심지역은 법적인 상인회를 구성하는 요건이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받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시에서 비도심지역의 상인회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의견 : 건의요구

조치결과(계획) : 완료

-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 제정(2022.2.10.)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향후계획

- 2022. 05. :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홍보 및 모집
 - 같은 읍면동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단체
 - 남양주시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상공인 50명 이상의 단체
- 2022. 07. :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사업 공고 및 선정
- 2022. 08. :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진행
- 2022. 12. : 사업추진 결과 보고 및 정산

【 위생과 】

목 록

- 집단 무료급식소 위생상태 점검
-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음식판매업소 규정
재검토
- 남양주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집단 무료급식소 위생상태 점검

지적사항

- 집단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식중독 등의 위험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요망

조치의견 : 처리요구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및 「2021년 노인복지 사업안내」(경기도)
 - 무료급식 경로식당 및 재가 노인 배달 시설 9개소에 대하여 집단급식소에 준한 위생점검 완료(2021.11.18.)
 - 식중독 홍보물 배부
 - 식중독 예방 홍보 포스터 점검 시 배부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부착 마스크 500매 배부
 - 건강 취약계층 이용 집단급식소 위생용품 배부
- ※ 고무장갑 400개, 조리 종사자 위생모 70개, 기구용 살균제 70개, 행주 700개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향후계획

- 주관부서의 특별합동점검 요청 시(연 2회) 위생점검 추진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음식판매업소 규정 재검토

□ 지적사항

-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음식판매업소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결과(계획) : 조치중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영업신고 수리시 담당 공무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 환경 정비구역 내 기존 공장, 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바닥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
-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영업 신고 또는 영업 신고사항변경 신고(면적 인정 포함 등)와 관련하여 중앙부처(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질의 및 의견 조회 : 2022. 1. ~ 2.
- 영업장 면적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지침(매뉴얼) 마련 건의(식약처) : 2022.02.10.
-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관리대장 정리(면적 기입 등) 검토 보고 : 2022.03.14.

□ 문제점 및 대책

- 영업장 면적이 없는 영업장의 면적 산정과 관련한 지침 또는 매뉴얼 부재
- 음식점 영업 완화를 위해 상수원관리규칙 규제개선 선행이 필요함

□ 향후계획

-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영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남양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 지적사항

-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남양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지원대상자를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야 하나 위원회 심의 없이 선정하였으므로 향후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지원대상자를 투명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 : 완료

- 남양주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 사항 심의 추진
 -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2021년도 사업 정산 및 2022년도 지원대상 위생업소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추진